

신규 대기배출시설 신고 관련 참고 자료

□ 신규 대기배출시설 신고 대상

-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개정('19.5.2)에 따라 도서지역 발전 시설, 동물장묘시설, 탄화시설, 흡수식냉온수기 등 대기배출시설 포함(세부내용 : 참고 1)

□ 대기배출시설 신고 기한

- 기존시설은 '21.12.31까지 신고 유예(흡수식 냉온수기 중 2011.1.1. 이후 설치 시설은 '22.12.31까지)(별표 3 제2호다목)
 - ※ '20.12.30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개정에 따라 신고기한이 '20.12.31까지 → '21.12.31까지 조정

참고1

신규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 현황

배출시설	대상 배출시설
도서지방용 발전시설	○ 설비용량이 1.5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용 내연기관
동물장묘시설	○ 「동물보호법」 제32조에 따른 동물 화장시설
유기질 비료 제조시설	○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(1) 반응시설 (2) 흡수시설 (3) 응축시설 (4) 정제시설(분리·증류·추출·여과시설을 포함한다) (5) 농축시설 (6) 표백시설 ○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(1) 용융·용해시설 (2) 소성시설 (3) 가열시설(연소시설을 포함한다) (4) 건조시설 (5) 회수시설 ○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.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(1) 혼합시설 (2) 입자상물질 계량시설
탄화시설	○ 용적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숯 및 목초액을 제조하는 전통식 숯가마 및 그 부대시설
흡수식 냉·온수기	○ 다른 배출시설에서 규정한 흡수식 냉·온수기는 제외한다. ○ 시간당 증발량이 0.5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,500킬로칼로리 이상인 흡수식 냉·온수기. 다만, 환경부장관이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서는 시간당 증발량이 0.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,800킬로칼로리 이상인 흡수식 냉·온수기를 말한다. ○ 나)에도 불구하고 가스(바이오가스를 포함한다) 또는 경질유[경유·등유·부생(副生)연료유1호(등유형)·휘발유·나프타·정제연료유(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5의3에 따른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(減壓蒸溜)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한다)]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,238,000킬로칼로리 이상인 흡수식 냉·온수기만 해당한다.
습식시설	○ 습식시설(동력 15kW 이상)
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	○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(1) 가열시설(연소시설을 포함한다) (2) 성형시설